

#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5,000,000	24,150,000
일반회계	632,000,000	18,960,000
특별회계	173,000,000	5,190,000
공기업특별회계	36,000,000	1,08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000,000	51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000,000	570,000
기타특별회계	137,000,000	4,11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200,000	126,0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20,000	63,6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30,000	21,9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075,000	92,250
주택사업특별회계	815,000	24,450
치수사업특별회계	11,080,000	332,4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870,000	116,100
대지보상특별회계	450,000	13,5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23,000	69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8,680,000	2,960,4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630,000	348,9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7,000	9,8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406,588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6,320,000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416,432천원, 내부유보금 4,670,156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